



Sanyou IP News

2021 년 3 월 발행통권 제 225 기

뉴스요약

1.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설립 2주년 기자 회견
2.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2020년 기술류 지식재산권 전형사건 10건
3. 국가지식재산권국 <지식재산권 고품질 발전 연간업무 가이드(2021)> 통지 발표
4. 2021 양회 지식재산권 키워드
5.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중대 특허권 침해 분쟁 행정 판결 방법(의견수렴안)> 발표
6. 2021년 제1기 상표 심사사건 심사 상황 월별보고서
7.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판결 요지(2020) 요약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설립 2주년 기자 회견

2월 26일 오전,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에서 기자 회견을 개최하여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설립 2주년 업무 상황과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연간보고서(2020)> 및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전형사례를 발표하였다.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연간보고서(2020)> 데이터 발표

1. 사건 기본 데이터 통계

2020년 법정에서 새로 접수한 기술류 지식재산권 사건은 3176건이 심사종결한 사건은 2787건으로 접수한 사건과 종결한 사건의 비례는 88%이며 사건종결율은 76%(2019년에 남은 사건 512건 포함)이다. 2019년 동시기와 비교하였을 때, 접수한 사건은 1231건 증가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63% 증가하였으며, 종결한 사건은 1354건 증가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95% 가까이 증가하였다.

새로 접수한 민사 2심 실체사건은 1948건이고 접수한 사건은 986건 증가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102% 증가하였다. 새로 접수한 행정 2심 사건은 670건이고 접수한 사건은 429건 증가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178% 증가하였다.

심사종결한 민사 2심 실체사건은 1742건이고 심사종결한 사건은 1156건 증가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197% 증가하였다. 심사종결한 행정 2심 사건은 494건이고 심사종결한 사건은 352건 증가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248% 증가하였다.

2. 판사 1인당 평균 사건종결 수량 및 사건 평균 심사주기 통계

2020년 판사 1인당 평균 사건종결 수량은 82.5건이고 이는 전년대비 110% 증가하였다. 민사 2심 실체사건 평균 심사주기는 121.5일이고 행정 2심 사건 평균 심사주기는 130.7일이다.

3. 사건 유형 통계

새로 접수한 1948건의 민사 2심 실체사건 중 발명 특허권 침해분쟁은 435건, 실용신안 특허권 침해분쟁은 754건, 특허출원권 및 특허권 소유권 분쟁은 163건,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쟁은 360건, 기술계약 분쟁은 67건, 기술비밀 분쟁은 44건, 식물신품종권 분쟁은 40건, 독점 분쟁은 30건, 회로배치 분쟁은 5건, 기타 유형의 분쟁은 50건이다. 전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새로 접수한 민사 2심 실체사건 총수량은 102% 증가하였고, 특허출원권 및 특허권 소유권 분쟁은 전년도의 9건에서 163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차지하는 비중은 4위로 상승하였고, 기술비밀 분쟁/식물신품종권 분쟁/독점 분쟁/회로배치 분쟁 등 전문 기술성이 비교적 강한 분쟁사건 수량은 작년보다 현저히 많아졌다.

새로 접수한 670건 행정 2심 사건 중, 행정 수권·확권류 사건은 622건, 행정처리류 사건은 17건, 기타 행정사건은 31건이다. 행정 수권·확권류 사건에서 발명 특허출원 거절재심 행정분쟁은 226건이고 실용신안 특허출원 거절재심 행정분쟁은 18건, 디자인 특허출원 거절재심 행정분쟁은 2건, 발명 특허권 무효 행정분쟁은 175건, 실용신안 특허권 무효 행정분쟁은 149건, 디자인 특허권 무효 행정분쟁은 52건이다. 전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새로 접수한 행정 2심 사건 총수량은 178% 증가하였고 디자인 특허권 무효 행정분쟁 수량은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전년도의 13건에서 52건으로 증가하였다.

4. 재판결과 통계

2020년 법정에서는 총 2787건의 사건을 심사종결하였다. 그중 원심재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종결한 사건은 1667건, 소송취하 방식으로 종결한 사건은 539건(항소 취하 비준과 항소 취하 간주를 포함, 그중 취하 비준은 대부분 법정의 주재하에 민사사건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취하신청함), 조정방식으로 종결한 사건은 158건(민사조정서를 발급한 경우), 조정 및 취하 방식으로 종결한 사건이 25% 차지하고, 파기환송 또는 판결을 뒤집는 방식으로 종결한 사건은 405건이고 이는 15% 차지하며, 기타 방식으로 종결한 사건은 18건이다.

심사종결한 1742건의 민사 2심 실체사건 중 원심재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종결한 사건은 779건, 소송취하 방식으로 종결한 사건은 463건, 조정방식으로 종결한 사건은 158건, 조정 및 취하 방식으로 종결한 사건은 36% 차지하고, 파기환송 또는 판결을 뒤집는 방식으로 종결한 사건은 339건이고 이는 19% 차지하며, 기타 방식으로 종결한 사건은 3건이다.

심사종결한 494건의 행정 2심 사건 중 원심재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종결한 사건은 430건, 소송취하 방식으로 종결한 사건은 22건이고 이는 5% 차지하며, 파기환송 또는 판결을 뒤집는 방식으로 종결한 사건은 39건이고 이는 8% 차지하며, 기타 방식으로 종결한 사건은 3건이다.

5. 해외 및 홍콩·마카오·대만 관련 사건 통계

2020년 법정에서 접수한 해외 및 홍콩·마카오·대만 관련 사건은 총 376건으로 이는 접수한 총수량의 12% 차지하며 전년대비 116% 증가하였다. 그중 민사 2심 사건은 228건이고 행정 2심 사건은 148건이다.

법정에서 심사종결한 해외 및 홍콩·마카오·대만 관련 사건은 총 281건으로 이는 심사종결한 총수량의 10% 차지하며 전년대비 187% 증가하였다. 그중 민사 2심 사건은 185건이고 행정 2심 사건은 96건이다.

사건 관련 분야의 특징은 명확하고 보호를 강화하려는 방향이 돌출하다.

1. 전반적인 사건 특징

첫째, 실체사건의 수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새로 접수한 2심 실체사건은 2618건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118% 증가하였다. 그중 새로 접수한 행정 2심 사건은 670건이고 이는 전년 동시기의 2.8배이고 증폭이 가장 크며, 새로 접수한 민사 2심 실체사건은 1948건이고 이는 전년 동시기의 2배를 초과한다.

둘째,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경영방식에 관련된 사건이 비교적 많다. 법정에서 접수한 전략성 신흥산업 관련 사건은 478건으로 접수사건 총수량의 13%를 차지한다. 그중 신세대 정보기술 산업 관련 사건은 267건, 생물의학 산업 관련 사건은 94건, 첨단 설비 제조 산업 관련 사건은 50건,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 관련 사건은 33건, 신재료 산업 관련 사건은 21건, 신에너지 산업 관련 사건은 3건,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관련 사건은 1건이다.

셋째, 사회적 관심이 크다. 사건 법정 심문 영상의 평균 조회수는 1.9만회이고 조회수가 10만을 초과한 사건은 47건 있다.

2. 특허 민사 사건의 특징

첫째, 실용신안 특허권 침해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이 하강하였다. 해당 유형의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의 47%에서 2020년의 38%로 하강하였다.

둘째, 특허출원권 및 특허권 소유권 분쟁 수량이 빠르게 증가한다. 해당 유형의 사건은 전년도 9건에서 163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주로 직무발명, 기술비밀 침해, 기술계약 3가지 기초 법률관계와 관련된다.

셋째, 대량으로 특허 권리보호하는 사건 수량이 하강하였고 법정의 관련 조치가 초기성과를 가져왔다. 2019년 동시기와 비교하였을 때, 2020년 하반기에 대량으로 특허 권리보호하는 사건이 대폭 하강하였고 124건에서 40건으로 감소되었다.

넷째, 복잡한 기술문제 사실 조사과 관련된 사건이 증가하였다.

다섯째, 행정기관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피소된 경우가 증가하였다.

3. 특허 행정 사건의 특징

첫째, 관련된 기술분야가 광범위하고 특허 유형은 주로 발명이다.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큰 것은 여전히 기계 분야이고 관련된 특허 유형은 주로 발명이고 다음은 실용신안이며 제일 적은 것은 디자인이다. 발명특허에서 거절재심 행정분쟁과 발명특허권 무효 행정분쟁은 총 401건이다.

둘째, 사건의 쟁점은 주로 진보성, 신규성이다. 특허 수권·확권 사건에서 쟁점이 진보성, 신규성 인정과 관련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상이다. 그중 또 주로 진보성 인정에 관련된 사건이다.

셋째, 파기환송 및 판결을 뒤집은 재판이 차지하는 비율의 절대 수치는 비교적 낮지만 전년대비 현저

히 증가하였다. 심사종결한 행정 2심 사건은 494건이고 파기환송 및 판결을 뒤집은 사건은 39건이며 이는 8%를 차지한다. 절대 수치는 특허 민사 사건보다 낮지만 전년도 특허 행정 사건 파기환송 및 판결을 뒤집은 비중 3.5%와 비교하면 증폭은 배로 되었다.

넷째, 항소인은 주로 특허권자와 특허출원인이다. 법정에서 444건의 특허 수권·확권 사건을 심사종결하였다. 그중 특허권자와 특허출원인이 항소한 사건은 377건으로 84.9% 차지하였고, 무효판결 신청인이 항소한 사건은 44건으로 9.9% 차지하였고,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항소한 사건은 30건으로 6.8% 차지하였다.(데이터 통계는 여러측에서 항소한 경우도 포함)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2020년 기술류 지식재산권 전형사건 10건

2월 26일,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설립 2주년 기자회견에서 2020년 기술류 지식재산권 전형사건 10건을 발표하였다.

1. 무선통신 표준필수특허 “소송 중지 명령” 삼안(三案)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은 중국법원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최초의 “소송 중지 명령” 성질의 행위보전 판결을 내렸고 획기적으로 “일벌금” 조치를 적용하여 행위보전 결정의 집행을 확보하였다.

2. “바닐린” 기술비밀 고액 배상 사건

해당 사건의 배상액은 1.59억위안으로 중국법원에서 효력을 발생한 판결 중 최고 배상액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다.

3. “카보머” 기술비밀 징벌성 배상액

해당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이 내린 최초의 징벌성 배상 사건으로 법정 징벌성 배상의 최고 배수인 5배의 징벌 배수를 최종 확정하였다.

4. NX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

해당 사건은 소송 참여자가 증거보전을 방해한 후과를 명확히 하였고 피소 침권자가 소송에서의 표현을 손해배상 확정의 고려 요소로 하였다.

5. “셀카봉” 실용신안특허 대량으로 권리보호하는 시리즈 사건

최고인민법원은 권리침해의 근원인 생산업체에 대해 권리침해 징벌 강도를 강화하였고 특허권자가 직접적으로 권리침해 제품의 제조 절차를 상대로 근원을 탐구하여 권리를 보호할 것을 격려했다.

6. “리튬이온 2차전지” 발명특허 무효 사건

해당 사건은 2조 이상의 다른 수치 범위를 이용하여 보호범위를 공동으로 한정된 청구항은 명세서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표준을 명확히 하였다.

7. “포털사이트 접속 방법” 특허 민사·행정이 교차된 2건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은 민사·행정 항소사건을 통일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우세를 발휘하고 절차를 교차적으로 진행할 경우 일으킬 수 있는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는 절차 및 지연 문제와 청구항 해석 불일치의 판결 척도 문제를 해독하였다.

8. “리튬전지 보호 칩” 회로배치 침해 사건

해당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이 접수한 최초의 회로배치 독점권 분쟁 2심 사건으로 집적회로 산업 규범화 혁신 발전에 지도적 의미가 있다.

9. 버싱회사(博生公司)의 “티몰” 관련 역방향 행위보전 사건

해당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이 최초로 내린 역방향 행위보전 사건이다. 동적 보증금의 적용은 특허권자, 피소침권자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3자의 이익을 양호하게 평형시켰다.

10. “China Bricks & Tiles Industrial Association”의 독점 사건

해당 사건은 수평적 독점계약의 자발적 실행자는 반독점법에서 의도하는 구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고 법에 따라 수평적 독점행위를 타격하고 공평하게 경쟁하는 질서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가지식재산권국
<지식재산권 고품질 발전 연간업무 가이드(2021)>
통지 발표

최근,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는 <지식재산권 고품질 발전 연간업무 가이드(2021)> 통지 및 22항의 2021년 임무 리스트를 발표하였다. <리스트>에서는 상표, 특허대리기구 위법행위를 엄격하게 타격하고, 악의적으로 사재기 및 상표 선등록하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자격증 대여(挂证) 및 무자격 특허대리/혁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정상 특허출원을 대리/부정수단으로 업무를 모집하는 등 행위를 중점적으로 타격하고 지식재산권 출원에 대한 지원을 전면적으로 취소한다.

2021 양회 지식재산권 키워드

3월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가 개막하였다.

리커창은 정부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의 협력과 개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화 체제를 응용하여 기업 혁신을 격려하는 내용을 언급하였다. 기업 혁신의 주도적 지위를 강화하고, 선도 기업이 혁신 연합체를 구성하는 것을 격려하고, 산학연구협력 융합 경로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성과 소유권 격려 체계를 완비하고, 기업 투자 감독 관리 체계와 발전 정책을 개선하며, 대중 창업과 만중 혁신을 깊게 추진할 것이다.

전국 인민대표 전국 정협위원의 일부 제안 및 건의

- 상업비밀 보호법을 공포할 것을 제안

- 침권자에 대한 징벌 강도를 더욱 강화하고 혁신 발전을 보호하고 격려
- 칩산업 사슬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력을 강화
-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
- 국가에서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국가표준 전문 쾌속 경로를 설립할 것을 제안
- 중점 해외 지식재산권 사건의 업계 교류 및 연구 시스템을 설립할 것을 제안
- 중국 약품 특허 연결 제도 시스템 설립 및 완비를 가속화할 것을 제안
- 지식재산권 보험 제도 설립을 가속화
- 지식재산권 침권자 블랙리스트 제도 설립
- 지식재산권 온라인 보호를 강화하고 산업 사슬 권리침해를 타격할 것을 제안
- 농업지식재산권 보호 책임 및 법률보호를 강화
- 리튬전지 분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
- 지식재산권 투자은행을 설립하고 과학기술혁신 전환 매커니즘을 최적화
- 인터넷 플랫폼 체계성 독점을 연구하고 <반독점법> 개정을 추진
- 글로벌 지식재산권 관리에 깊이 참여
- 지식재산권 담보금융을 추진

민주 당파 중앙, 전국 상공조합의 일부 제안

- 중국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지원 매커니즘을 설립
- 신기술을 채용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개선
- 지식재산권 서비스업을 강력하게 발전시키고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
- 과학기술 혁신 기업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지지
- 과학기술 전환 매커니즘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과학기술 혁신 발전을 조력
- 의약 혁신 지식재산권 발전을 추진
- 연구형 병원 건설을 강화하고 의약 산업 혁신 발전을 촉진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중대 특허권 침해 분쟁 행정 판결 방법(의견수렴안)> 발표**

최근,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는 <중대 특허권 침해 분쟁 행정 판결 방법(의견수렴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발표하였다. 관련 기업 및 각계인사들은 2021년 4월 2일 전에 메일, 팩스 또는 서신 방식을 통해 개정 및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1년 제1기 상표 심사사건 심사 상황 월별보고서

2020년 12월 16일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 접수한 각유형 심사사건 신청은 총 39979건으로 동년 대비 3.01% 증가하였고, 심사발행한 각유형 심사사건은 총 32595건으로 동년대비 8.02% 감소하였고, 접수한 행정재심의 신청은 총 113건으로 동년대비 20.98% 감소하였고, 행정소송에서 접수한 1심 피소 사건은 총 1593건으로 전년대비 27.03% 감소하였고 월간대비 13.42% 감소하였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판결 요지(2020) 요약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판결 요지(2020)>는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에서 2020년에 심사종결한 2787건의 기술류 지식재산권 사건에서 55개의 전형사건을 특별선정하여 46조의 판결 규칙을 추출해 내어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이 기술류 지식재산권 심판분야에서 어렵고 복잡하며 신형 사건을 처리하는 사법이념, 심사구상과 판결방법을 반영하였다.

특허 민사 사건 심판

1. 청구항 중 “—”에 대한 해석

특허 청구항 중 “—”은 당연히 수량 의미상의 한정 작용이 있는 것은 아니며 본 분야 보통 기술자들이 청구범위와 명세서를 열독한 후의 이해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의미를 확정하여야 한다.

2. 특허 권리침해 판단 중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함”에 대한 판정

특허법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함”은 단순히 영리성 활동에 종사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으며, 오직 특허 시행 주체의 기구 성질에 대한 인정에 근거하여서도 안되며, 특허 시행 행위 자체에 착안하여 해당 행위가 시장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 특허권자 시장 이익에 영향주는지 여부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규칙이 균등원칙 적용에 대한 제한을 특별히 제외

본 분야 보통 기술자들이 청구범위, 명세서를 열독한 후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청구항에서 어느 하나의 특징을 특별히 강조하여 고의적으로 특정 기술방안을 제외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균등원칙을 적용하여 제외된 기술방안을 특허권 보호범위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4. 발명특허출원이 거절되고 동일 기술방안으로 같은 날짜에 신청한 실용신안 특허권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당사자가 동일 기술방안으로 같은 날짜에 발명특허와 실용신안특허를 신청하여 발명특허출원이 신규성을 구비하지 않거나 1편의 동일 기술분야의 대비문헌에 기초하여 진보성을 구비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미등록되고 법률상태가 이미 확정되었을 경우 당사자가 별도로 이미 등록된 실용신안특허에 의거하여 권리침해 손해에 대한 구제를 청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특허 행정 사건 심판

5. 2조 이상의 다른 수치 범위의 기술특징으로 보호범위를 공동으로 한정된 청구항은 명세서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2조 이상의 다른 유형의 수치 범위의 기술특징으로 보호범위를 공동으로 한정된 청구항에 대해, 본 분야 보통 기술자들이 명세서 열독을 통해 각 수치 범위의 기술특징사이에 존재하는 상호대응 관계를 확정할 수 있고 유한 횟수의 실험을 통해 발명을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식을 얻을수 있으며 과도한 노동을 통하지 않고 발명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기술방안을 제외할 수 있을 경우 해당 청구항은 명세서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6. 주지 사실성 증거에 대한 판단

주지 사실성 증거는 통상 기술 사전, 기술 안내서, 교과서 등에 본 분야 기본 기술지식을 기재한 문헌을 말한다. 기술 사전, 기술 안내서, 교과서 이외의 문헌은 주지 사실성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문헌의 매체 형식, 내용 및 그 특징, 수용자, 전파 범위 등 요소와 결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7. 접근 권한이 필요한 사이버 공간 정보는 종래 디자인 또는 종래 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접근 권한이 필요한 사이버 공간속의 정보는 종래 디자인 또는 종래 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사이버 공간의 주요 용도, 정보 업로드 시간 및 공개 상황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하고 특허 출원일 이전의 해당 정보가 대중들이 획득하고 싶으면 획득할 수 있는 상태에 처해 있는지 여부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접근 권한이 필요한 사이버 공간이 주로 상업용 목적으로 할 경우, 이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한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해당 사이버 공간이 미공개 또는 오직 특정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반대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구별 기술특징 판단에서 발명 구상에 대한 평가

(해당 당선된 사건은 Sanyou에서 대리한 Oerlikon Textile GmbH & Co.KG, 국가지식재산권국과 피항소인 ZHEJIANG YUEJIAN INTELLIGENT EQUIPMENT CO.,LTD.의 발명특허권 무효 행정 분쟁 사건)

발명 구상이 각 기술요소에 대한 결합 및 종래기술이 이런 결합에 대한 지도를 고개하지 않았으며 이런 결합이 발생할 수 있는 기술효과도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본 특허와 가장 가까운 종래기술의 구별 특징을 확정할 때 상호 결합한 여러 기술요소를 단일체로 간주할 수 있으며 하나의 구별 기술특징으로 판단할 수 있다.

9. 종래기술 개선 동기의 출처

종래기술 개선의 동기는 반드시 가장 가까운 종래기술의 결함을 극복하려는 것에서 생기는것은 아니다. 가장 가까운 종래기술이 명확한 결함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여전히 해결이 필요한 기술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선 동기가 생길 수 있다.

10. 가장 가까운 종래기술이 구별 기술특징의 응용이 개선 동기의 판단에 대한 영향을 명확히 제외

발명 창조 기술방안과 가장 가까운 종래기술이 구별 기술특징이 존재하고 해당 종래기술이 해당 구별 기술특징의 응용을 명확히 제외할 경우, 본 분야 보통 기술자들이 구별 기술특징이 해결하는 기술문제를 마주할 시 해당 종래기술에 대해 대응한 기술 개선을 통해 보호하려는 기술방안을 획득하고자 하는 동기가 결핍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11. 무효심판 절차에서 청구항 수정에 대한 영향을 병행

동일 특허권의 여러 무효심판청구 심사절차에서 특허권자는 그중 한개의 절차에서 청구항을 수정하였고 해당 수정이 국가지식재산권국으로부터 받아들일 경우, 수정전의 청구항을 심사기초로 하는 후피소결정이 일으킨 특허권 확권 행정사건은 심사기초가 존재하지 않은 원인으로 계속하여 심사할 필요가 없다. 이럴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후피소결정을 취하여야 하지만 국가지식권국에게 다시 결정을 내리라고 명할 필요는 없다.

12. 화합물이 신규성을 구비하지 않는다는 추정을 뒤집는 증거책임

종래기술문헌이 이미 특허출원 또는 특허가 보호하려는 화합물을 공개하였을 경우 해당 특허출원 또는 특허가 신규성을 구비하지 않는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출원일 이전에 해당 화합물을 제조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럴 경우,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해당 종래기술문헌에 기재한 실험방법을 이용하여 해당 화합물을 제조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분야의 일반적인 실험방법을 사용하고 본 분야 보통 기술자들의 일반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도 해당 화합물을 제조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관할 등 절차성 사건 심판

13. 해외 관련 민사 분쟁 사건 관할의 적당한 연계원칙

중국내에서 거주지와 대표기구가 없는 피고가 제기한 해외 관련 민사 분쟁 사건에 대해 중국법원이 관할권을 구비하는지 여부는 해당 분쟁이 중국과 적당한 연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허가물 소재지, 특허 집행지, 계약 체결지, 계약 이행지 중 1개가 중국내에 있을 경우 해당 사건은 중국과 적당한 연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야 하며 중국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구비한다.

14. 신청에 따른 증거보전에 대해 고려하여야 할 요소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인민법원은 증거보전 신청이 근거한 초보증거와 증명하려는 사건 사실 사이의 관련성,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려야 한다. 증거보전의 필요성은 보전 신청한 증거가 사건 사실과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보전 신청한 증거가 멸실될 리스크 또는 나중에 획득하기 어려운지 여부, 출원인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을 모두 취했는지 여부 등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허성국 (한국고객총괄팀장/ Partner / Patent attorney) /

한영욱 (Senior partner, Senior Consultant of Business Development)

Beijing Sanyou IP Group

추신 : 본 메일은 뉴스레터 발신전용이므로 문의나 지시사항은 sanyou@sanyouip.com 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